

강남구의 주민조례발안 제도 지원은?



상시 상담창구 운영

- 주민조례발안제도의 전반적인 절차 안내
- 조례의 제정 · 개정 · 폐지 청구서 등 관련 서식 제공
- 조례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 연계

찾아가는 입법교실 운영

- 주민자치아카데미 등 주민대상 조례발안제도 교육
- 강사 : 변호사 등 전문강사
- 동영상, 교육자료 등 수시 교육

문의 기획예산과 법제팀 (T.3423-5843)

주민조례발안제도 안내영상



내가 직접 만드는 주민조례방안 제도
주민조례 어떻게 청구하나요?

발안제도 안내영상을 통해 청구 방법을
알아보세요!

<https://youtu.be/Q1UrLrLD3e8>



주민조례 청구안내

주민조례 청구안내



우 리 · 동 네 · 정 책 은
우 리 가 · 직 접 · 만 들 어 요 !



주민조례 청구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주민조례발안법」 시행으로 청구인이 직접 구의회에 조례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조례(발안)가 쉬워졌습니다!



청구권자 연령 하향조정

기존 19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조정



청구서명 요건 완화!

주민 총수 1/50 ➡ 주민 총수 1/100 (강남구 기준)

※ 강남구 주민조례 발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주민수 : 4,723명 (2025.1.10. 공표)



청구절차는 간소화! 지원은 강화!

주민이 강남구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강남구의 상시상담창구 운영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을
통한 주민조례청구



주민청구조례안 이행력 강화!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의결, 의원
임기만료시에도 차기의회에서 계속 심사

주민조례(발안)청구 및 공표절차는?

01 청구인 조례안 작성



누가? 청구인

- 강남구 상시상담창구 운영(강남구 기획예산과 법제팀)
- 조례안 작성 지원(강남구의회)

02 대표자증명서 발급 신청



누가? 대표자 ➡ 의회의장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 조례안을 첨부하여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03 주민청구조례 대표자 증명서 발급



누가? 의회의장 ➡ 대표자

- 청구권자인지 확인하여 대표자 증명서 발급·공표

04 청구인명부 서명 개시



누가? 대표자·수임자 ➡ 청구권자

- 서명요청기간 : 증명서발급사실 공표일로부터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작성 및 서명

05 청구인명부 제출



누가? 대표자 ➡ 의회의장

- 서명요청기간 지난날부터 5일 이내 제출

06 청구인명부 내용 공표



누가? 의회의장

- 명부를 제출 받은날부터 5일 이내 공표

07 청구인명부 열람 실시 및 이의신청 접수



누가? 의회의장

-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명부공표일로부터 10일
- 이의신청 심사결정 :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 서명보정기간 운영 : 10일

08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누가? 의회의장 ➡ 대표자

- 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통지

09 조례안 발의



누가? 의회의장

- 수리된 날부터 30일 내 의회의장명의로 발의

10 강남구의회 심의·의결



- 청구인대표자를 참석시켜 청구취지, 질의답변 등 의견청취 가능

문의 강남구의회 (☎ 3423-8114, 8141)

